

휴대폰 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휴대폰인 경우 적용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에 있어서 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휴대폰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사고) 이 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의 목적이 파손되거나 또는 침수되어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사고발생 직전상태로 복구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이러한 비용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에 가입되어 있거나 기타 보상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 및 보상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합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리비용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리퍼비용(Refurbish)

2. 아이패드, 갤럭시탭 같은 태블릿 PC

3.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4.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5. 재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6. 제조사의 무상 A/S규정에 해당하거나,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한 불량 또는 하자가 있는 상품
7. 제3자 또는 퀵서비스, 택배, 우편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에 의해 배달 중 파손된 물품
8. 정상적인 사용 또는 시간경과에 의해 발생하는 제품 자체의 변형, 노후 현상, 변색으로 손상된 물품
9. 단말기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외관상의 손해
10. 해충에 의한 손상 및 파손, 방사능 오염
11. 제품의 기능, 성능, 디자인 등의 개선 목적으로 제품의 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조 또는 이물(異物)을 부착한 경우
12. 전쟁 또는 유사상황(침략, 폭동, 반란, 혁명 등)에 의해 파손된 상품
13. 공정한 법 집행 과정 중 파손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품
1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파손된 상품
15. 천재지변(홍수, 태풍, 지진 등)에 의한 파손
16. 분실, 화재 등에 의한 제품의 멸실
17. 소모성 제품과 부품의 소진 및 소멸
18. 단말기를 제외한 기타부속물(SIM카드, 외장메모리, 장식용 덮개 등)은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됨
19. 재생품, 재조립품
20.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및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파일
21. 지연, 사용손실,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손실, 시장가치의 하락, 또는 기타 간접손실
22. 노후화 또는 감가상각
23. 계약자 책임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24. 면세점(국내면세점 포함) 및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25. (NICE평가정보) 서비스의 계약상 제공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참고] 보통약관 제10조 및 제11조

(전략)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후략)